

국민총 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박정현 · 최혁진 · 김남근
장철민 · 전종덕 · 윤종균
조승래 · 박지원 · 허성무
민형배 · 이해식 · 문대림
박홍배 · 이병진 · 박범계
김한규 · 김종민 · 염태영
안도걸 · 전현희 · 양부남
송옥주 · 장종태 · 이용선
서왕진 · 김준혁 · 박용갑
남인순 · 윤종오 · 이주희
황명선 · 박지혜 · 권칠승
송재봉 · 복기왕 · 민병덕
박홍근 · 위성곤 · 강준현
고민정 · 김상욱 · 진선미
한창민 · 전용기 · 부승찬
김재원 · 문진석 · 박균택
박 정 · 강득구 · 용혜인
맹성규 · 신정훈 · 황정아
한병도 · 이정문 · 박성준
윤건영 · 이광희 · 이연희
이상식 · 김성희 · 임호선
이재관 · 채현일 · 김원이

임미애 · 조정식 · 정춘생
김남희 · 허 영 · 김기표
노종면 · 박수현 · 모경중
이학영 · 서영교 · 김정호
백혜련 의원(79인)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
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국민총 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표화하여 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3. “행복지표”란 국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으로서 소득 등 생활 수준,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여유시간, 환경, 주거, 공동체, 자율성, 거버넌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지표를 말한다.
4. “행복조사”란 국민의 행복 수준 및 관련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를 말한다.
5. “국민총행복지수”는 행복지표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국민총행복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6. “행복영향평가”란 정책을 국민의 행복 증진에 부합하도록 설계·수정하기 위하여 법령, 정책, 예산 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이하 “행복정책”이라 함)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수행, 지역 및 집단 간 행복격차 완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의 행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제5조(국민총행복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총행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행복지표와 행복조사의 결과 및 제13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지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총행복 증진의 기본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 추진 전략 및 체계
3. 국민총행복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행복지표 개발, 행복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및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방안
6. 행복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컨설팅 방안
7. 행복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8. 그 밖에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른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이행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측정 및 정책 환류에 관한 사항
 6. 행복영향평가 기준 수립 및 실시 권고에 관한 사항
 7.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의 행복 증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역행복지표 개발, 지역행복조사 실시, 지역행복지수 산출 등 지역의 행복정책 시행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행복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민의 행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행복지표 개발, 행복지표 및 행복

조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확보와 지원) ① 국가는 행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행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재정 또는 행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제12조(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조사 실시)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복지표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행복지표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조사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행복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행복지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행복지표의 측정 요인, 행복조사 실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민총행복지수) ① 정부는 행복지표와 행복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총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 산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민총행복지수의 산출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행복지표 및 지역행복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행복지표는 국민총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지표와 지역행복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행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행복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지표 개발, 지역행복조사 실시 및 지역행복지수 산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행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역행복지수 및 지역행복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행복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국민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주민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민행복영향평가 및 주민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 간 형평과 국민참여

제16조(지역 간 행복격차 해소) ①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지역이 지역행복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③ 국가는 국민총행복지수의 지역별 분석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되, 전체 자료는 지역 간 서열화나 경쟁을 유도하지 아니하도록 제한된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국민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 제도 및 디지털 참여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총행복의 가치와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민총행복에 관한 사항이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및 공무원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행복의 날) 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복정책박람회 등 행복의 날 및 행복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